

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

※ 입학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오니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 명	성 별	남	주민 등록 번호							-
		여								
주 소 (도로명)	전주시 덕진구			선행 교육 기관 (※해당자만 작성)	()유치원 ()어린이집					
가 족 사 항	구 분	부	모	기타 동거가족	2024 학년도 본교 재학 형제 자매	학년반	이름			
	성 명			조 부(유,무) 조 모(유,무) 누 나(명) 형 (명)		-				
	휴대전화			오 빠(명) 언 니(명) 여동생(명) 남동생(명)		-				
특기사항 (성격, 건강, 습관 등)										
<자녀 교육에 대한 요망사항>										

- ◆ 예비소집: 2024년 12월 30일(월) 본교 별관 2층 강당(신입생과 보호자 1인만 참석)
1차 14:00~14:30, 성명 가나다 순 ㄱ부터~ㅌ까지
2차 14:30~15:00, 성명 가나다 순 ㄴ부터~ㅎ까지
- ◆ 지참서류: ①취학통지서 ②신입생 입학원서 ③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◆ 입 학 식: 2025년 3월 4일(화) 10:00, 상세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안내
- ◆ 늘봄교실(기존 돌봄교실) 안내 및 신청서 배부: 예비소집 당일
- ◆ 늘봄교실 신청서 및 입급 서류 제출: 2024년 12월 31일(화)~2025년 1월 3일(금) 16:30까지 1층 교육지원실
- ◆ 입학유예(면제)를 원하시면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학교에 오셔서 의무취학(유예, 면제)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교 교육지원실에 제출하고, 뒷면 <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>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주동신초등학교장 귀하

예비 학부모 안내 자료

유의사항

- 1) **(취학의무)**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초·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.
- 2) **(조기입학·입학연기)** 조기입학·입학연기 희망 시,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※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,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
- 3) **(취학유예·면제)**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·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, 입학 예정인 해의 1~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·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「의무교육관리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,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
- 4) **(예비소집 참석)**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, 학생의 소재·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,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
- 5) **(통학구역 변경 시)**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,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) **(연락처 변경 시)**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, 취학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7) **(취학통지서 분실)**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8) **(위장전입 금지)**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,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9) **(해외출국 예정시)**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* 취학의무 유예·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,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·안전 확인 절차(「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의 2」), 연락처 사전 제출 등